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신종갑 의원)

의안 번호	23-47
----------	-------

발의년월일 : 2023. 3. 21.

발의자 : 신종갑, 고병준, 권영숙,
남해석, 차해영, 최은하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과 관련하여 따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공유재산 관련 관리행위에 대한 의결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3. 3. 22. ~ 3. 2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사항)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2. 연간사용(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임대)계약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사무국 조진남
연 락 처	02-3153-6341